



미국 직장 건강보험의 근로자 부담금 증가 현황

김미화 연구원

- 미국은 최근 전체 건강보험료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반면 근로자 부담금은 급격히 상승하고 있음. 이는 기업이 제공하는 건강보험 중 근로자가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이 높은 HDHP/SO의 가입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임. 기업은 근로자 부담금이 높은 건강보험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 보험료를 절감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자에 대한 비용 전가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 미국 직장 건강보험의 근로자 부담금(deductibles)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음.¹⁾

- 카이저가족재단(Kaiser Family Foundation)의 조사²⁾ 결과에 따르면, 2016년 현재 미국 직장보험 중 개인보험의 평균 자기부담금은 1,478달러로 2011년 991달러에 비해 49% 상승하였음.
 - 건강보험 가입 근로자 중 자기부담금 조항이 있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의 비율도 2011년 74%에서 2016년 83%로 증가하였으며, 2016년 개인보험의 공제금액이 1,000달러 이상인 근로자가 처음으로 절반 이상(5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 건강보험료의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으나 근로자 부담금은 급격히 상승하여 보험료 인상폭에 비해 근로자 부담금의 인상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전체 건강보험료 증가율은 2001~2006년 63%에서 2006~2011년 31%로 크게 하락한데 이어 최근 5년간은 20%로 증가세가 더욱 둔화된 것으로 나타남.
- 전체 건강보험료³⁾ 인상폭과 근로자 부담금의 인상폭을 비교해 보면 건강보험료는 2006년 11,480달러에서 2016년 18,142달러로 58% 상승한데 반해,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2006년 2,973달

1) Kaiser/HRET(2016), Employer Health Benefits Survey.

2)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 근로자 3인 이상 민간/공공부문 기업 1,993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진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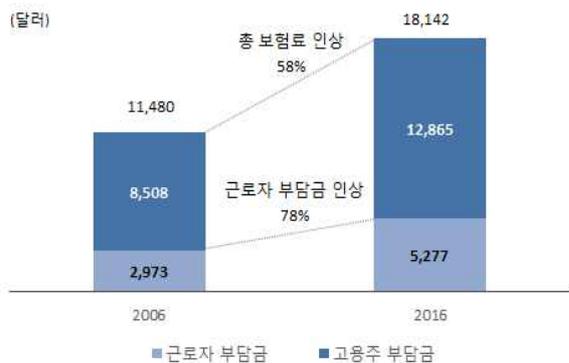
3) 가족보험 기준.

리에서 2016년 5,277달러로 78% 상승하여 근로자 부담금의 상승폭이 더 크게 나타남.

■ 근로자 부담금의 상승은 최근 근로자 부담금 비율이 높은 HDHP/SO⁴⁾의 가입률이 크게 증가한 것에 기인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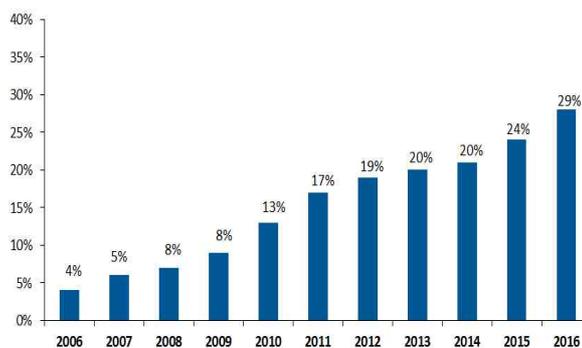
- 최근 미국 직장 건강보험의 종류 중 가장 점유율이 높은 PPO⁵⁾의 가입률은 하락하고 있는 반면 HDHP/SO의 가입률은 2006년 4%에서 2016년 29%까지 증가하였음.
 - 2016년 기준 근로자의 48%가 PPO에 가입해 있으며, HDHP/SO의 가입률은 29%로 PPO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HDHP/SO는 첫째, 보험료가 저렴하고, 둘째, 건강보험계좌에 보험료를 납입하기 때문에 진료를 받지 않을 경우 예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병원진료를 받을 경우 다른 보험에 비해 근로자 부담금이 아주 높은 단점이 있음.
 - 따라서 젊고 건강한 사람들에게 유리한 반면, 만성질환 등으로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 부담금이 매우 큼.

〈그림 1〉 연평균 건강보험료 및 근로자 부담금 변화



주: 가족보험 기준.
자료: Kaiser/HRET(2016).

〈그림 2〉 건강보험 가입 근로자 중 HDHP/SO보험 가입자 비율



자료: Kaiser/HRET(2016).

4) 근로자가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이 높고, 의료비 지출이 없는 경우 의료보험료 일부를 적립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 보험 (High-Deductible Health Plan with a Saving Option).
5) 주치의를 거치지 않고 보험회사가 지정한 네트워크 안에서 환자가 원하는 전문의를 선택하여 치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 (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

- 미국 직장 건강보험의 근로자 부담금 상승은 기업의 의료비용 절감 노력과 더불어 오바마 케어에서 시행 예정인 고액보험에 대한 과세(Cadillac tax)정책으로 인해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음.
- 미국의 기업들은 근로자 부담금이 높은 건강보험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 보험료를 절감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에 건강보험료의 인상폭은 둔화되고 있음.
 - 하지만 근로자 부담금이 급증함으로 인해 근로자에 대한 비용 전가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 또한, 오바마 케어는 2020년부터 기업이 일정 기준을 넘어선 고가의 건강보험을 제공할 경우 초과 부담분에 대해 고용주에게 세금을 부과(Cadillac tax)할 예정이며, 이에 세금이 부과될 처지에 있는 고용주들이 향후 근로자 부담금을 더욱 확대할 가능성이 있음. [kiri](#)